

	보도자료
	2010. 1. 7.(목) 조간부터 보도가능

작성부서	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국 IT업무팀		
책임자	최재환 부국장 (3145-8290)	담당자	최철훈 선임조사역 (3145-8294)
배포일	2010. 1. 6.(수)	배포부서	공보실 (3145-5788~91) 총 4매

제 목 :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

금융감독원(원장 김종창)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크게 확대됨과 아울러 다양한 잠재적 보안위협이 제기됨에 따라 「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」을 마련*하였음

* 본 안전대책은 금감원, 금융회사 및 금융정보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“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 마련 T/F (’09.12월초부터 운영)”에서 수립

○ 이번 안전대책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금융서비스의 혁신을 지원하면서 **예상되는 잠재적인 보안위협**으로부터 고객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스마트폰 기반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**적정한 보안기준을 마련하는데 중점**을 두었음

안전대책은 ① 전자금융거래 부문, ② 기술적 침해대응 부문, ③ 취약점 모니터링 부문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수립되었음

① 전자금융거래 부문

-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가입 시 **다단계 가입자 확인**을 거치도록 하고 **로그인시 사용자 인증을 강화**하는 등 서비스 이용단계에서 이용자의 신원 확인을 강화
- PC 인터넷뱅킹의 전자자금이체시 적용하는 거래인증방법과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를 적용함으로써 **PC 인터넷뱅킹과 유사한 보안수준 적용**

② 기술적 침해대응 부문

- 금융거래정보는 **송 수신구간에서 암호화**하여 송수신되도록 함으로써 정보유출에 대비
- 비밀번호 등 중요입력정보가 유출되거나 변조되지 않도록 **입력정보 보호대책**을 적용하고 중요 금융정보는 **스마트폰에 저장 금지**
-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에 의한 보안위협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**악성코드 예방대책**을 적용하고, 전자서명을 의무화 하여 **고객이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방지**

③ 취약점 모니터링 부문

-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스마트폰 관련 새로운 취약점을 신속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체제 구축

아울러 금감원은 「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 마련 T/F」를 금년도에도 계속 운영하여 향후 예상되는 보안위협에 **범금융권이 공동 대응**할 계획임

붙임 :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주요 안전대책 1부. 끝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s.or.kr>

(붙임)

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주요 안전대책

1. 기본방향

- (적정한 보안수준)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보안위협으로부터 고객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절한 보안수준 유지
 - PC 인터넷뱅킹서비스와 유사한 보안수준을 적용
- (보안위협에 대한 공동대응) 금융회사, 정보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향후 예상되는 보안위협에 공동대응

2. 안전대책

가. 전자금융거래 부문

- ① 다단계 가입자확인*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 가입절차를 강화
 - * 1단계 확인(ID비밀번호 등) → 2단계 확인(일회용비밀번호 등) → 3단계 확인(공인인증서 등)
- ②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가입시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후 가입허용
- ③ 로그인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거나, ID비밀번호 외에 일회용비밀번호(보안카드 포함)를 추가로 적용*하는 등 사용자 인증강화
 - * 이중요소 인증 (two-factor authentication) 적용
- ④ PC 인터넷뱅킹의 전자지금이체시 적용되는 거래인증방법(계좌비밀번호, 일회용비밀번호, 전자서명)과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를 적용

나. 기술적 침해대응 부문

- ① 금융거래의 기밀성 및 무결성 확보를 위해 “스마트폰↔금융회사” 쉼 통신구간에서 금융 거래정보는 암호화하여 송수신
- ② 비밀번호 등 중요입력정보가 유출되거나, 변조되지 않도록 입력정보 보호대책 적용
- ③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 금지

④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에 의한 각종 보안위협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악성코드 예방대책 적용

⑤ 거래사실의 부인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 등을 이용

다. 취약점 모니터링 부문

- ①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는 자체 보안전문인력, 정보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취약점 분석 및 대응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제 구축
- ② 금감원은 「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 마련 T/F」을 지속 운영하여 범금융권과 공동 대응